#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47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강민국·김상훈·이헌승

윤한홍 · 강명구 · 권성동

김재섭 · 김소희 · 박상웅

박덕흠 • 조승환 • 정동만

의원(12인)

##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아 혁신과 성장에 기여해 왔으나, 그 이면에는 시장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임.

현행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이에, 중개·검색 엔진·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가장 빈번하고 시장에 미치는 문제가 큰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 나.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관련 필요사항을 별도의 장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규정(안 제2장의2 신설).
- 다.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반경쟁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하여금 증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에 활용하기 위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 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 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 아. 제2장의2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벌칙 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25조제1호, 제130조제1호 및 제130조제9호).

#### 법률 제 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활동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플랫폼 이용자 수, 경쟁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플랫폼 이용자의 전환비용, 사업·서비스의 구조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의3.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이용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의2(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제8조의2(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계열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2.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를 결부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 한하는 행위
- 4.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 격이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경쟁을 제한하지 않거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

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해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 2. 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기능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3(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 ① 일정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그와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규모 (계열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3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직전 3개 사업 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100분의 60 이상
    - 나.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1천만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 이상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 셋 이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100분의 85 이상. 이 경우 시

장점유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2천만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 이상
- ② 제1항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둘 이상의 플랫폼 이용자 간의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는 제외한다.
- 2.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 3.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 4.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 5. 운영체제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 7. 그 밖에 플랫폼 이용자 간 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규모,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

폼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4(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 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제8조의3에 따른 지배적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의 추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사업자단체,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5(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본다.
- 제8조의6(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온라인 플랫폼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8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하 게 의심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 제8조의5"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6"으로 한다.

제125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9. 제8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4의2.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
	업자"란 국내 시장에서 상당
	한 규모로 활동하며 다른 사
	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견고하고 지속
	적인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
	점유율, 플랫폼 이용자 수, 경
	쟁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플랫
	폼 이용자의 전환비용, 사업·
	서비스의 구조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u> &lt;신 설&gt;</u>	<u>4의3.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u>
	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해당 서비스를 최종적
	으로 소비하기 위해 이용하는
	소비자와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이용사
	업자를 말한다.

5. ~ 20. (생 략) <u><신 설></u>

<신 설>

5. ~ 20. (현행과 같음)제2장의2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경쟁촉진

- 제8조의2(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계열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2.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 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 는 서비스를 결부하여 제공하 는 행위
  - 3. 플랫폼 이용자가 경쟁 온라 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4. 이용사업자에게 자신의 온라 인 플랫폼 서비스에서 거래하

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경쟁을 제한하지 않거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자의 내부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수 있으며 해당 효과가 발생

<신 설>

<u>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u> 분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 2. 정보 보호 및 안전 확보, 온

   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핵심

   기능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하

   기 어려운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 ① 일정한 온라 인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와 관 런하여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및 그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규모(계열회사 의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 한다)가 3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사 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모마다 100분의 60 이상 나.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1천만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상
-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가. 셋 이하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100분의 8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가 직전 3개 사 업연도의 각 사업연도마다 2천만명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 ② 제1항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물 이상의 플랫폼 이용자 간의거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하 는 금융상품거래는 제외한다.
- 2. 온라인 검색 엔진 서비스
- 3.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 4.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 스
- 5. 운영체제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광 고 서비스
- 7. 그 밖에 플랫폼 이용자 간 거 래,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

<신 설>

<신 설>

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규모, 시장점유율, 월평균 국내 활성 플랫폼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조의4(실태조사)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구조, 서비스 운영 현황 파악 및 제8조의3에 따른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추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 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사업 자단체,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시정조치) ① 공정거래

<u><신</u> 설>

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지배적사업자"는 "지배적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로 본다. 제8조의6(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가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액에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3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8조의2제1항을 위

반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지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

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 무) -----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u><신 설></u>

2. ~ 6.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1의2. 온라인 플랫폼의 금지행 위 규제에 관한 사항
- 2. ~ 6. (현행과 같음)
- 제88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 거래위원회는 지배적 온라인 플 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제8조의2제1항 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것으 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해 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온라 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7조</u>, 제
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
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래위원회는 <u>제8조</u>, 제38조, 제43 ----- <u>제8조, 제8조의6</u>---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 ------

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
<u>다.</u>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
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u>제7조, 제</u> 8
조의5
② (현행과 같음)

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 7. (생략)
- 제130조(과태료) ① 사업자, 사업 자단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사업자단체·공익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1. 제7조제1항, 제8조의5제1항 -
2. ~ 7. (현행과 같음)
제130조(과태료) ①

<신	설>
----	----

1. ~ 7.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 1.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 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 출한 자
-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9. 제8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